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. 4. 22 선고 2019가단656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

담당변호사 조광묵

피고C

변론 종결2020. 4. 1.

판결 선고2020. 4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,

가. 아산시 D 대 1,680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29, 3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ㄱ) 부분 조립식판넬 1m², 같은 도면 표시 29, 3, 4, 17 내지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ㄴ) 부분 천막 및 원형물통 2m², 같은 도면 표시 17, 4 내지 7, 10 내지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ㄷ) 부분 조립식판넬 및 쇠기둥 6m², 같은 도면 표시 10, 7 내지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ㄹ) 부분 조립식건물 1m²를 각 철거하고,

나. 위 대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들이 아산시 D 대 1,680㎡의 공유자인 사실, 피고가 위 대지 위의 주문 제1항 기재(ㄱ), (ㄴ), (ㄷ), (ㄹ) 부분에 건물 등을 축조하여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아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(ㄱ), (ㄴ), (ㄷ), (ㄹ) 부분의 건물 등을 철거하고,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.

판사원용일

별지